



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, 어울려 성장하는 행복의령교육

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

부림초봉수분교장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공사

2024. 6.



(행정지원과)

I. 용 역 설 명 서

- 가. 용역명: 부림초봉수분교장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
- 나. 용역목적
 -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하는 「부림초봉수분교장 교사동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공사」에 대하여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및 도급인에게 적정한 안전조치 등을 지 도·권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
- 다. 용역장소: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한지9길 6 부림초등학교봉수분교장 내
- 라. 용역개요: 재해예방 기술지도 6회
- 마.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
 -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한다
 -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정, 민원사항, 기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 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내지 정산처리한다

Ⅱ. 용 역 과 업 지 시 서

1. 일반과업지시서

- 1) 일반사항
 - 1. 1. 적 용

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「유곡초 본관동 내진보강 및 외벽개선공사」 현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적용한다.

- 1. 2. 적용순서
- (1) 설계서에 누락,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·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.
- (2)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.
 - 가. 과업지시서
 - 나.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
- (3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.
- 1. 3. 법규 우선 준수

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.

- 2) 용역감독 등
 - 2. 1. 용역감독관 경유

수급자가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 등을 경유하여야 한다.

- 2. 2. 용역감독관 등의 업무
- (1) 용역감독관 등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. 현장

대리인, 현장요원, 수급자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 시행에 필요한 지시, 확인, 검토 및 검사,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이에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(2) 용역감독관 등은 수급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, 승인, 시정지시, 이행촉구,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.(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)

3) 업무책임한계

3. 1. 일반사항

- (1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(이하 "지도기관"이라 한다)은 발주기관의 용역감독관 및 건설공사 공사감독관(이하 "공사감독관"이라 한다)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(2) 본 용역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」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(3) 본 과업과 관련되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·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(4)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,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만·형 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- (5) 수급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, 세부시행계획, 인력투입계획 및 발주기 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, 청렴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(6) 수급자는 기술지도 전 건설공사도급인 및 용역감독관,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(7) 수급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(8)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.
- (9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 및 기술지도 대상공사 공사감독 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3. 2.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

착수계 등의 제출서류는 착수일 이전에 제출한다

- (1) 착수신고서
- (2) 책임기술자 선임계
- (3) 건설공사 별 참여기술자 배치계획
- (4) 과업 참여인원의 기술지도의 자격,교육이수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5) 착수내역서
- (6) 예정공정표
- (7)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
- 3. 3. 보안 및 비밀유지 등
 - (1)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(2) 과업 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

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,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·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- (3) 수급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수급자는 본 용역을 다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.
- 3. 4. 의무이행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 - (1) 수급자는 행정절차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,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(2)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대상 공사의 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 - (3)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,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아래와 같은 행위 등의 대하여 발주기관의 참여자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 -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
 -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도급인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 -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- 3. 5. 용역완료 성과물의 제출
 - (1) 준공계 2부
 - (2)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계약서 2부
 - (3)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결과보고서 2부
 - (4)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2부
 - (5) 건설공사 별 기술지도 사진대지 2부
 - (6) 전산화한 성과품(USB 또는 CD) 1부

2. 특별과업지시서

- 1) 일반사항
- 1. 1. 용역기간

본 용역의 기간은 75일간이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(1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상공사의 작업이 불가능할 때
- (2)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
- (3) 기술지도 대상공사 추가 발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
- (4) 기타 민원제기, 설계변경 등으로 기술지도 대상공사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
- 1. 2. 설계변경조건

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.

(1) 과업 수행 중 기술지도 대상 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·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

- (2)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
- (3)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- (4)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
- (5)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
- 1. 3. 주요업무 사전 승인

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관 및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- (1)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내용변경
- (2) 주요 과업내용의 설정 또는 변경
- (3) 기타 용역감독관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

2) 재해예방 기술지도

- 2. 1. 기술지도기관 기본 임무
 - (1) 지도기관(수급자)은 해당 공사가 안전관련 법령(가이드, 지침 등 모두 포함)의 산재 예방 조치를 지도, 조치권고,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- (2)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.
 - (3) 지도기관은 해당 공사의 도급인이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도 및 조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(4)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 부내용(안전조직 구성, 안전교육, 안전점검,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)에 대한 지도 및 조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(5)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여 야 한다.
 - (6) 지도기관은 기술지도에 대한 결과보고서, 공사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.
 - (7) 지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,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 - (8) 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, 점검 중 발견한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(9) 지도기관은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2. 2. 과업 상세 사항

- (1)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<별표18>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(2) 건설공사 건별로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
- (3)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건별로 계약체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(K2B) 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고,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

(4) 기술지도 횟수

-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,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,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<별표19>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)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)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.

-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,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관 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(5)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

-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, 공사 규모,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,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,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
- 각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담당 요원은 건설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격과 경험 및 안전 관련 지식을 갖춘자여야 한다.
-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, 건설공사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(다음 기술지도일)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

(6)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

-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한 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도급인 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
-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한다.

2. 3. 대금의 지급

- (1) 본 용역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용역 착수 후 증·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 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.
- (2) 기술지도비는 설계예산서에서 정한 공사금액 구간 별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.
- (3) 지도기관은 3월에 1회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지급 간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